

「2026년 ICT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」 공고

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전파진흥협회는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ICT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「2026년 ICT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」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. 04. 01.
국립전파연구원장
한국전파진흥협회장

1. 사업 개요

가. 사업목적 :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국내 ICT 중소기업 수출 확대에 기여

나.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

다. 대상제품 : ‘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’ [별표1]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

- ※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: 전자파적합성(EMC), 유선, 무선, 전자파흡수율(SAR), 전자파강도(EMF)
- ※ 국내 중소기업 개발 제품만 신청 가능(OEM 등 해외 제조방식 가능, 단순 수입제품 불가)
- ※ 1개 제품에 복수 국가의 해외인증 신청 가능

라. 공고 및 접수기간 : '26. 4. 1. ~ '26. 5. 8. 18시

- ※ 접수 마감시간 전 접수분에 한함

마. 사업기간 : 협약일 ~ '26. 11. 30. 이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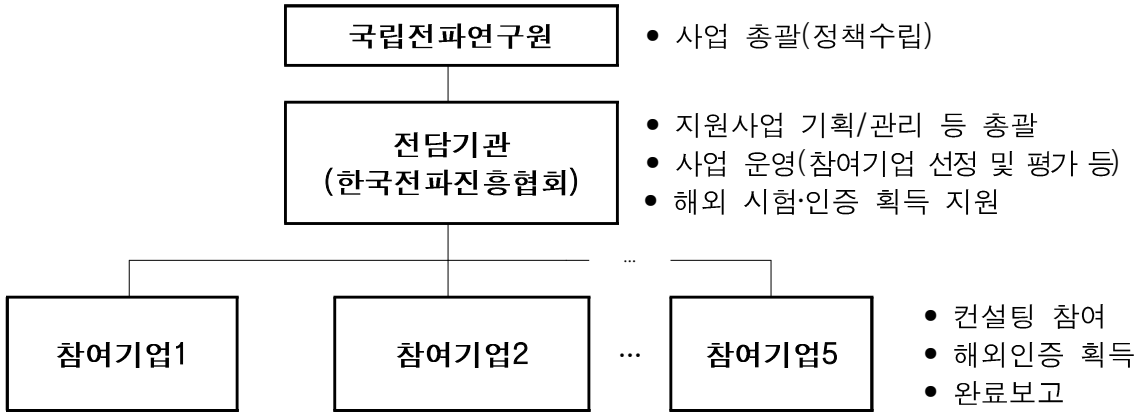
- ※ 사업기간 내 인증서 발급을 원칙으로 함

바. 지원규모 : 기업당 1개 제품 최대 18백만원 이내

- ※ 총 지원규모는 5개사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- 사. 지원내용 :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
- ① 시험비 및 인증비 등 인증획득 비용의 70% 이내 지원,
 - ② 절차, 시험기준,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

아. 추진체계



2. 사업비 구성 및 지원금 지급

가. 사업비 구성

대상기업	총사업비	정부지원금	기업부담금
ICT 중소기업	100%	총 사업비 70% 이내	총 사업비 30% 이상(현금)

나. 지원금 지급 : 과제당 최대 18백만원 이내

구분	지급횟수	지급 시기
정부지원금	1회 지급	해외 인증 획득 완료 및 완료보고서 확인 후 교부

※ 과제 완료 후 시험인증비 및 부가세 전액 입금 확인 후 지급

< 정부지원금 예시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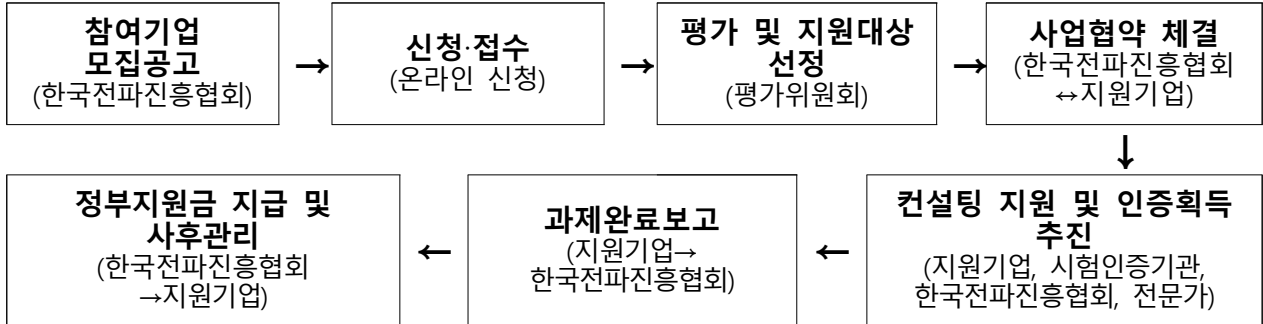
시험인증비 총액	시험인증비		부가세
	정부지원금	기업부담금	
1,100만원	700만원	300만원	100만원

3. 지원 내용

구분	세부항목
대상제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' [별표1]의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※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: 전자파적합성(EMC), 유선, 무선, 전자파흡수율(SAR), 전자파강도(EMF) ※ 국내 중소기업 개발 제품만 신청 가능(OEM 등 해외 제조방식 가능, 단순 수입 제품 불가) ※ 1개 제품에 복수 국가의 해외인증 신청 가능 ※ 전기안전(Safety), 유해물질(RoHS) 분야는 지원 제외
시험·인증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외 인증에서 규정하는 시험규격에 의거한 제품 시험(TEST) 비용 - 해외 인증 신청 및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 (인증서 발행비, 인증신청비, 심사비,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) ※ 심사비 : 인증 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, 서류심사 등 ※ 법정대리인 선임비 :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(책임자)을 선임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※ 국내 적합성평가(KC인증) 비용은 지원 제외
컨설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외인증 획득에 대한 진행절차, 제품별 시험기준 및 방법 등 컨설팅 지원
비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행기간 내 인증서 발급을 원칙 ※ 단, 시험 및 인증서 발급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시험·인증기관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받아 전담기관과 협의할 수 있음 - 협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험·인증기관에 신청(접수)를 완료하여야 하고, 30일 이내에 테스트를 착수하여야 함 ※ 단, 테스트 착수 일정은 시험·인증기관의 사정에 따라 진행 상황을 확인받아 전담기관과 협의할 수 있으나, 최대 60일 초과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※ 인증기관 : ISO/IEC 17065에 따라 인정받은 국내외 기관 또는 해당 국가 정부 ※ 시험기관 :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(KOLAS, APLAC, ILAC 등)에서 ISO/IEC 17025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

4. 추진 절차

가. 추진 개요



※ 추진절차는 사업 추진 상황, 보조금 교부 절차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나. 세부 내용

절차	내용	비고
신청·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온라인 신청 •과제신청서·계획서 등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 	신청기업
서면 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신청요건 준수 여부 및 제출 서류 확인 등 	한국전파진흥협회
선정 심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과제계획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선정 	평가위원회
협약 체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과제계획서 보완 및 제출 •협약 체결 	한국전파진흥협회, 지원기업
과제수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시험 진행 및 인증획득 •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지원 	지원기업, 시험인증기관, 한국전파진흥협회, 전문가
중간점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(필요시) 적합성 및 진척도 등 현장방문 점검 	한국전파진흥협회, 지원기업
완료보고서 제출·확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수행기간 내 지원기업 완료 보고서 제출 •최종 결과 확인 및 점검 	한국전파진흥협회, 지원기업
사후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사업성과(수출 등) 확인을 위한 사후조사 실시 	한국전파진흥협회, 지원기업

※ 추진절차는 과제 수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5.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

가. 신청자격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

- 인도네시아,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, 몽골 인증 획득 계획 보유 우대
- 벤처기업, Inno-Biz기업, 녹색기업,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사회적기업, 창업기업*, 지방소재기업** 우대

* (창업기업) 공고일 기준 7년 이내의 기업

** (지방소재기업) 본점이 서울·경기·인천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

나. 지원 제외 대상

- 정부 또는 한국전파진흥협회와의 협약·계약과 관련하여 위반·제재 조치 중인 기업 및 대표자
-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고 있는 기업
- 신청 내용이 사업목적, 특성,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
- 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이지 않은 기업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
-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
-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

-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협약서 제출에 의함
- 지원 선정 후에도 위 조건에 해당 시 지원 선정 취소

6.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

가. 신청방법 : 이메일을 통한 제출

※ 접수 이메일 : swhan@rapa.or.kr

※ 메일제목 : 참여기업명 ICT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서류제출

○ 사업공고 내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·제출

○ 접수기한 마감시간까지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제출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며, 미제출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

나. 제출기한 : '26. 5. 8. 18:00(마감시간 전 접수분에 한함)

※ 접수 이메일 수신시간을 기준으로 하며, 정상 수신 시 접수완료 회신메일 발송

7. 제출 서류

제출순	제출서류	서식	부수
1	과제신청서	서식1	1부
2	과제계획서 * 평가근거자료 포함	서식2	1부
3	지원기업 참여확약서	서식3	1부
4	개인(기업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* 대표자, 총괄 책임자, 실무 담당자, 기업	서식4	1부
5	청렴서약서	서식5	1부
6	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	-	각 1부
7	중소기업확인서	-	1부
8	(해당시) 우대기업 확인서	-	1부

- 모든 서류는 PDF 버전을 기본으로 함

- 날인/서명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, 기업 또는 당사자의 날인/서명 후 PDF 스캔하여 제출

- 사업비는 만원단위로 작성(천원단위 절사)

- 작성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서식은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'해당없음'으로 기술

- 다른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,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 기술

-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함

- '할 수 있다', '고려하고 있다'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으로 간주하며, 계량화 가능한 것은 계량적으로 표현할 것

- 제출서류의 각 쪽에는 쪽 번호를 매겨야 하며 작성매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

- 전담기관 요청 시, 오프라인으로 원본서류 제출 필요

- 신청서류를 제출순으로 정리한 후, 1개의 압축파일로 첨부하여 제출

- '제출서류명_참여기업명_제품(모델)명_인증명.pdf'

- 제출서류 파일 **예시**

참여기업명_ICT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신청서류.zip

1. 과제신청서_참여기업(주)_ABC_CE.pdf
2. 과제계획서_참여기업(주)_ABC_CE.pdf
3. 지원기업 참여확약서_참여기업(주)_ABC_CE.pdf
4. 개인(기업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_참여기업(주)_ABC_CE.pdf
5. 청렴서약서_참여기업(주)_ABC_CE.pdf
6. 사업자등록증(법인등기부등본)_참여기업(주)_ABC_CE.pdf
7. 중소기업확인서_참여기업(주)_ABC_CE.pdf
8. 우대기업 확인서_참여기업(주)_ABC_CE.pdf

8. 평가절차

○ 전담기관의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서면평가 실시

- 과제계획서를 바탕으로 제품 기술력, 수출 가능성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대상 선정

9. 평가기준 및 배점

기준 및 배점		내용	평가
지원 타당성 (20점)	기업규모 (1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년도 매출액 - 10억원 미만(5점), 10억원~30억(4점), 30억원 이상(3점) ▶ 상시 근로자 수(전년도 기준) - 10명 미만(5점), 10~30명(4점), 30명 이상(3점) 	정량
	인증경험 (1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동일 또는 유사제품의 국내 적합성평가 인증 취득 여부 - 3회 이상(10점), 2회(8점), 1회(6점), 없음(4점) 	정량
수출 가능성 (40점)	해외인증 획득의지 (1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해외인증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여부 - 3명 이상(5점), 1~2명(3점) ※ 조직도 등 증빙자료(담당자 명함 등) 첨부 필수 ▶ 해외인증 관련 교육 이수 이력(최근 5년간) - 3회 이상(5점), 1~2회(3점) ※ 이수확인증 첨부 필수 	정량
	해외진출 준비성 (1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외국어 홈페이지, 카탈로그, 지면광고 등 홍보활동 - 건당(국가당) 3점, 최대 10점 	정량
	해외진출 적극성 (1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시회 참가 또는 해외시장개척단 등 유사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 경험 - 건당(국가당) 5점, 최대 10점 	정량
	해외진출 구체성 (1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신청 제품의 해외수출 추진 가능성 및 계획 - 계약체결(10점), 진행중(5점) ※ 객관적 증빙자료(구매의향서, 발주서 등) 첨부 필수 	정량
기술력 (40점)	기술수준 (2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제품의 기술 수준, 타사 제품 대비 우수성 - 매우우수(20점), 우수(16점), 보통(12점), 미흡(8점), 매우미흡(4점) 	정성
	시장경쟁력 (2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제품의 해외시장 경쟁력 - 매우우수(20점), 우수(16점), 보통(12점), 미흡(8점), 매우미흡(4점) 	정성
합계	100점	※ 기술력 평가점수 16점 미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	
가점 (6점)	최대 6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인도네시아,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, 몽골 인증 획득 계획(2점) ▶ 벤처기업, Inno-Biz기업, 녹색기업,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사회적기업, 창업기업*, 지방소재기업**(건당 1점, 최대 2점) * 공고일 기준 7년 이내의 기업 ** 본점이 서울·경기·인천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 	

10. 관련 법령 및 규정
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
-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
- 「ICT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」 사업 운영지침

11. 유의사항

- 정부지원금은 해외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·인증 비용에 한하여 지원하며, 디버깅 비용, 챔버 사용료 등 기타 부대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
- 제출된 서류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이 불가하며, 지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제출기한 내 누락 또는 미제출한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사업의 신청 및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·규정·지침 등 미숙지로 인한 지원취소 등 불이익은 지원기업에게 책임이 있으며, 공고에 미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·규정·지침에 따름
- 허위기재 또는 관련 문서의 위·변조로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,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
- 사업기간 내 사업 성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, 지원금의 부당(유용, 횡령 등) 사용,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할 경우, 해당 기업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
- 완료보고서 등 제출서류는 전담기관의 승인에 의해 확정되며, 사업기간 종료 후라도 수정·보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
- 본 공고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12. 문의처

구분	문의처	
사업 문의	한국전파진흥협회 전파진흥본부 국제협력팀	☎ 02-317-6094 swhan@rapa.or.kr